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황우진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

2023. 11. 21.(화)

영화 '기생충' 투자 성공 등을 부풀려 1,086억원대 폰지사기 범행한 투자사 대표 구속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(부장검사 김정국)는 '18. 6.경부터 '23. 2.경까지 약 4년 7개월 간 영화 '기생충' 투자 성공 등을 내세워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1,086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사 대표 A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(사기),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오늘(11.21) 구속기소하고, 투자자 모집에 참여한 골프선수 3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기소하였음
- 피고인 A 등은 ①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노하우가 있다고 거짓말하고, ② 영화 '기생충' 등 투자 성공을 적극 홍보하며, ③ 초기에는 '돌려막기'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끌어들이었으나, 사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'폰지사기'(Ponzi scheme)에 불과하였음
 - ※ 폰지사기 :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여 실제 투자대상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
- 검찰은 ▲ 관련 금융거래내역 분석 ▲ 주범 및 주요공범들에 대한 조사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거쳐,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구조와 골프 접대 등 투자자 모집 방법을 명확히 규명하여 기소하였고,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토지·주택과 오토바이를 비롯한 피고인들 소유 재산을 추징보전하였음
-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, '원금보장', '고수익' 등을 내세우는 금융·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음

1

피고인 [총 10명]

	피 고 인	지 위	역 할	처분
1	A(41세)	투자사 운영자	본건 범행 전체 주도	구속기소
2	B(38세)	직원(팀장)	투자금 관리, 수익금 정산 등	불구속기소
3	C(41세)	직원(영업직)	골프 접대, 투자자 모집	
4	D(39세)	직원(영업직)	골프 접대, 투자자 모집	
5	E(26세)	직원(영업직)	골프 접대, 투자자 모집	
6	F(37세)	직원(운전기사)	투자자 모집	
7	G(60세)	투자자	투자자 모집	
8	H(40세)	투자자	투자자 모집	
9	I(58세)	투자자	투자자 모집	
10	甲사	A 운영 법인	대표자인 A가 범행(양벌규정)	

2

공소사실 요지

- (피고인 A, B) '18. 6.~'23. 2. 돌려막기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비상장 주식 거래로 수익을 얻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1,086억 원을 편취 [특정경제범죄법위반(사기), 사기]
- (피고인들) '18. 6.~'23. 2. 위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보장 및 5~30%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여 투자자 38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786억 원을 모집 [유사수신행위법위반]
- (피고인 A) '23. 6. 금융투자업자인 乙사로 하여금 A의 특수관계인인 甲사의 채무 160억 원을 인수하게 하는 등 신용공여 [자본시장법위반]
* 乙사는 영화 '기생충' 등 투자사로, A가 실제 운영하였음

3

수사 경과

- '22. 5. 4. 서울시경,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정보 접수
- '23. 10. 26. 검찰, A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(사경 신청) / 10. 30. 발부
* '23. 11. 2. A, B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인용
- '23. 11. 3. / 11. 7. 서울시경 사건 송치(A 구속, B~I 및 甲사 불구속)
- '23. 11. 3.~20. 금융거래내역 분석, 주범 및 주요공범 조사 등 보완 수사
- '23. 11. 21. 검찰, A 구속 기소, B~I 및 甲사 불구속 기소

4

수사 결과

- 피고인 A 등은 영화 '기생충' 투자 성공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는 노하우가 있다고 속였으나,
 - 실제로는 비상장주식 투자로 36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, 영화 투자 수익 총계도 1억 원에 불과했으며, 영화 '기생충'에 대한 투자금액이 1억 원, 회수금이 2억 9,000만원에 불과하여 투자수익이 저조하였음
- 피고인들은 범행 초기에 '돌려막기'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추가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피해를 확산시킴
 - 또한 국내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골프선수(피고인 C, D, E)에게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수료(커미션)를 주고 골프 접대를 하거나, 피고인 A가 4~5개 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동시에 다니면서 인맥을 쌓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, 100억 원 이상을 편취당한 피해자도 3명에 달함
- 검찰은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주범 및 주요공범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원을 기존 투자금의 돌려막기, 접대비, 커미션(투자자 모집 수수료),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점, 투자손실 규모를 숨긴 채 기사로 '영화·스타트업 등에 성공적 투자를 하고 있다'고 홍보한 점 등 범행수법과 고의를 명확히 밝혀 피고인 A(구속)등 10명을 기소하였음
 -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, 피고인 A 소유의 토지·주택과 오토바이 등 재산에, 피고인 B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각각 추징보전(사경 신청) 조치를 완료하였음

5

향후 계획

-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, '원금보장', '고수익' 등을 내세우는 금융·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■■■